

고려 초 후비 궁원 제도의 시행과 정비*

신혜영**

목 차

- I. 머리말
- II. 태조대 후비 궁원의 출현
 - 1. 후비 궁원의 등장
 - 2. 후비 궁원의 등장 배경
- III. 경종~목종대 후비 궁원의 정비
 - 1. 경종대 궁원의 개호(改號)
 - 2. 목종대 궁관(宮官)의 출현과 배경
- V. 맺음말

국문초록 | 고려에서는 국왕의 배우자 즉 후비에게 독립적인 별궁과 경제 기반을 하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궁관을 설치하는 제도 즉 후비 궁원 제도를 운영하였다. 본고는 후비 궁원 제도의 시행과 정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후비 궁원 제도는 고려 초 특수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일찍이 신라의 왕실 여성이 궁원을 보유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국왕의 배우자로서 궁원을 보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고려 초 후비는 태조 당대부터 부인(宮夫人)·원부인(院夫人)으로 불렸는데, 이 칭호는 유명무실한 칭호가 아니라 실제 본궐 밖 궁원의 보유를 전제로 한 칭호였다. 예컨대 태조비 소서원부인 김씨는 소서원(小西院)을,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신혜영, 『고려시대 后妃 宮院 연구』, 2023,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가운데 2장 1절과 2장 2절을 수정·보완한 것임.

** 慎慧英.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강사. hyeyoung5248@hanmail.net

투고일: 2025. 04. 30. 심사완료일: 2025. 06. 26. 게재확정일: 2025. 06. 30.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8..7>

대서원부인 김씨는 대서원(大西院)을 하사받았다.

후비 궁원 제도는 국초 본궐의 협소함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시행되었다. 태조대 본궐은 국초와 통일전쟁기라는 상황 속에서 궁궐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여 정략혼을 통해 맞이한 후비와 그 소생 자녀 모두를 수용할 수 없었다. 태조와의 혼인을 위해 개경에 온 후비들이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해 후비 궁원의 하사가 시작되었다.

경종~목종대에 후비 궁원 제도가 정비되었다. 먼저 이 시기에 궁원명의 변화가 확인된다. 태조~광종대 후비 궁원은 황주원(黃州院)과 같이 후비와 유관한 지명(地名)으로 이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경종 이후의 후비 궁원은 모두 명복궁(明福宮)과 같이 아화(雅化)된 궁호(宮號)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광종대 이후 후비 궁원의 성격이 실제 거주지에서 왕실의 별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후비 궁원명을 ‘왕실 별궁’의 위상에 맞게 고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목종 연간에 최초의 궁사(宮使)가 확인된다. 궁관은 기록상 목종 연간에 처음 등장하지만,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궁원의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궁원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늦어도 성종 연간에 궁관 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고려시대 후비 궁원은 고려 초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경종~목종 연간에 정비되었다.

핵심어 | 후비, 궁원, 후비, 궁원, 별궁, 궁관

I . 머리말

고려시대 후비는 궁주(宮主)·원주(院主) 등으로 불렸다. 궁주·원주 등 주(主) 계열의 칭호는¹⁾ ○○궁 또는 ○○원 등 ‘궁원(宮院)의 보유’를 의미하는 칭호로 이해된다. 궁원은 본궐(本闕)²⁾ 밖에 위치한 별궁으로,³⁾ 여기에는

1) 고려시대 후비는 두 계열의 칭호로 불렸는데 하나는 왕후(또는 왕비)와 貴妃, 淑妃 등의 칭호이고, 다른 하나는 궁원의 주인을 의미하는 宮主, 院主 칭호이다. 일찍이 선행 연구에서 전자를 ‘妃 계열’의 칭호로, 후자를 ‘主 계열’의 칭호로 명명하였는데(이정란, 「高麗 后妃 號稱에 관한 考察」, 『典農史論』 2, 1996), 본고는 선학의 표현을 따르고자 한다.

궁원전(宮院田), 어량(魚梁), 주즙(舟楫), 노비 등의 경제 기반이 수반되어 있었다.⁴⁾ 또 궁원에는 궁원 주인을 위해 궁원의 경제 기반을 관리하는 등 여러 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使), 부사(副使), 녹사(錄事) 등의 궁관(宮官)이 설치되었다.⁵⁾

하나의 예로 연덕궁(延德宮)은 고려의 대표적인 후비 궁원이었다.⁶⁾ 이 궁은 본궐 밖 남쪽에 위치하여 남궁(南宮)으로 불렸고⁷⁾ 특히 이자겸의 난으로 본궐이 전소되자 국왕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⁸⁾ 또 후대의 기록이지만 공민왕[재위 1351~1374]은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 사후 그녀의 추복을 위해 운암사(雲岩寺)에 왕실 재정을 귀속시켰는데, 이때 연덕궁이 포함되었다.⁹⁾ 이러한 사실은 연덕궁에 경제 기반이 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덕궁에는 연덕궁사(延德宮使), 연덕궁부사(延德宮副使) 등 관원도 설치되었는데,¹⁰⁾ 의종 연간[재위 1141~1170]에 허량[許諒, 생몰 1092~1152]이 연덕궁부사를 역임한 실례도 확인된다.¹¹⁾

후비 궁원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도성사 또는 개경사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일찍이 개경에 소재한 전각(殿閣), 별궁에

2) 고려의 法宮·正宮의 이름으로 알려진 滿月臺와 延慶宮은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 잘못 알려진 것으로(장지연,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궁궐과 관청」,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비평사, 2002, 44~46쪽), 현재까지도 고려의 국왕이 거주하던 공간 명칭에 대한 공통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왕이 정무를 보고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공간을 본궐로 부르고자 한다.

3) 『宣和奉使高麗圖經』 卷6, 宮殿2 別宮.

4)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12年 8月 己卯.

5)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諸宮殿官.

6) 김창현, 「고려시대 후비의 칭호와 궁」, 『고려의 여성과 문화』, 신서원, 2007, 52쪽.

7) 『高麗史』 卷65, 志19 禮7 嘉禮 冊王妃儀.

8) 『高麗史』 卷127, 列傳40 叛逆 李資謙.

9) 『高麗史』 卷89, 列傳2 后妃2 恭愍王 徽懿魯國大長公主.

10)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祿俸 權務官祿.

11) 「허량묘지명」(김용선 편저, 『第五版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95쪽).

대한 사료를 정리한 연구에서 일부 후비 궁원을 조명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 및 교정하기도 하였다.¹²⁾ 또 고려 전 시기의 후비별·왕녀별로 보유한 궁원을 정리한 연구와¹³⁾ 대명궁(大明宮), 연경궁(延慶宮) 등 특정 궁원의 역사적 변천 및 위치 비정을 시도한 연구¹⁴⁾ 등이 발표되었다. 다음으로 궁원의 주인을 의미하는 궁주 칭호에 주목하여, 궁주 칭호의 시기별 변천 및 내직(內職) 칭호와의 관계,¹⁵⁾ 궁주 칭호의 기능,¹⁶⁾ 궁주 책봉제의 시행¹⁷⁾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후비의 생활 공간을 조명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후비는 평소 본궐에 살다가 출산과 산후조리, 왕실 의례 거행 등을 위해 자신의 궁원을 찾았다고 한다.¹⁸⁾ 이상의 연구를 통해 고려시대 왕실 여성의 궁원 보유 양상, 궁주 칭호, 궁원의 공간적 기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후비 궁원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또 어떠한 변화를 겪으며 정비되었는지에 천착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려의 후비 궁원은 신라에서 유래하였고 국초부터 시행되었으리라 막연히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는 고려의 후비 칭호에 대한 관념에서 비롯된

-
- 12) 前間恭作, 「開京宮殿簿」, 『朝鮮學報』 26, 1963.
- 13) 김창현, 「고려시대 후비궁과 왕녀궁」,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
- 14) 김창현, 「고려시대 대명궁 순천관과 객관」,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 ; 황향주, 「고려 전·중기 연경궁(延慶宮)의 위상과 위치」, 『한국중세사연구』 76, 2024.
- 15) 이정란, 앞의 논문, 1996 ; 권순형, 「고려 內職制의 비교사적 고찰 - 요·금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고려와 북방문화』, 양사재, 2011 ; 김창현, 「고려시대 후비궁과 왕녀궁」,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
- 16) 이정훈, 「고려전기 후비(后妃)의 칭호에 대한 제문제」, 『역사와실학』 77, 2022 ; 황향주, 「고려 전·중기 왕실 여성의 편제와 그 특성 -‘주(主)’계열 칭호의 존재 배경과 활용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74, 2023.
- 17) 신혜영, 「고려 중기 궁주 책봉제의 시행과 정착」, 『사학연구』 152, 2023.
- 18) 신혜영, 「고려 전기 후비의 생활공간과 의미」, 『여성과역사』 35, 2021.

것이 아닐까 싶다. 고려에서는 유독 후비를 지칭할 때 궁의 주인을 의미하는 궁주 칭호가 발전하였는데, 이 칭호는 신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¹⁹⁾ 고려 초부터 궁부인(宮夫人)·원부인(院夫人) 칭호가 사용되었으므로²⁰⁾ 당연히 신라·고려 초 후비는 궁원을 보유하였다고 이해한 것이다.²¹⁾ 그러나 실제로 신라·고려 초 후비가 궁원을 보유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 보거나 또는 국초의 궁부인·원부인 칭호가 궁원의 소유를 전제로 한 칭호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본고는 위와 같은 연구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Ⅱ장에서는 국왕의 배우자 곧 후비에게 궁원을 하사하는 현상은 고려 초에나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왜 하필 태조대 후비에게 궁원을 사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지를 고민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경종 연간 이후 궁원의 이름 즉 궁호(宮號)가 변화하고 목종대 궁관(宮官)의 출현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경종~목종대 궁원 제도가 정비된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²²⁾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많은 부분이 추론에 머무르고 있다. 대단히 부족하지만 본고를 통해 조금이라도 고려시대 후비 궁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길 기대한다.

19) 김창현, 「신라왕실과 고려왕실의 칭호」, 『한국고대사연구』 55, 2009.

20) 이정란, 앞의 논문, 1996 ; 권순형, 앞의 책, 2011.

21) 신라에서도 宮主 칭호를 사용했다는 견해로 김창현, 앞의 논문, 2009 ; 이현주, 「신라 상고 시기 부인(夫人) 칭호의 수용과 의미」, 『역사와현실』 86, 2012 ; 백동인, 「阿老에서 宮主로 : 新羅 麻立干期 王실과 宮主」, 『한국고대사연구』 105, 2022 등이 있다.

22)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여러 별궁이 있었다. 그리고 고려의 별궁 가운데 경제 기반이 부속되어 있는 별궁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별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 기반 없이 건물만을 의미할 때엔 별궁으로, 경제 기반이 부속된 별궁을 의미할 때엔 궁원으로 부르고자 한다.

II. 태조대 후비 궁원의 출현

1. 후비 궁원의 등장

한국사에서 왕실 여성이 별궁 건물을 보유한 사례는 신라에서부터 확인된다.²³⁾ 대표적으로 진성여왕[재위 887~897]은 왕녀 시절에 북궁장공주(北宮長公主)로 불렸고²⁴⁾ 또 그녀가 효공왕[재위 897~912]에게 양위하고 사망한 곳이 북궁(北宮)이었다는 점에서²⁵⁾ 진성여왕은 잠자 시절부터 줄곧 북궁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무열왕[재위 654~661]의 왕녀는 경주부(慶州府) 학원(學院) 부근에 있었던 요석궁(瑤石宮)에 살면서 이곳에서 원효[元曉, 생몰 617~686]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²⁶⁾ 그녀는 부왕(夫王)으로부터 요석궁을 하사받았을 것이다. 이 외에도 경덕왕 7년(757)에 태후가 영명신궁(永明新宮)으로 옮겨 거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⁷⁾ 당시 태후는 효성왕[재위 737~742]의 왕비인 혜명왕후로,²⁸⁾ 그녀가 정치적인 이유로 출궁할 때²⁹⁾

23) 고구려와 백제의 왕실 여성이 독립적인 宮院을 보유하였는지 알 수 없다. 먼저 고구려의 경우 유리왕 연간에 국왕의 繼室인 禾姬와 雉姬가 서로 투기하자 涼谷에 東宮과 西宮을 두어 각각 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3 琉璃王3年 10月). 그런데 이때 경제적 부속물이 함께 주어졌는지를 알 수 없고, 더욱이 후비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별궁을 하사한 특수한 사례로 보인다. 백제의 경우 후비에게 독자적인 별궁을 주었다는 단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24) 진성여왕이 잠자 시절에 북궁장공주로 불린 사실은 최치원, 『華嚴經社會願文』, 『孤雲集』 2 참고.

25)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真聖王 11年 12月 乙巳.

26) 『三國遺事』卷4, 義解5 元曉不羈.

27)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景德王 7年 8月.

28) 이현주,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한국고대사탐구』 21, 2015, 259~261쪽.

29) 경덕왕은 즉위 후 외척 세력을 숙청하는 등 왕권강화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때 외척 세력의 일원이었던 효성왕비 혜명왕후도 힘을 앓으면서 출궁한 것으로 짐작된다(김영미, 『新羅佛教思想史研究』, 민족사, 1994, 153~154쪽).

경덕왕으로부터 별궁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라에서도 왕실 여성이 보유한 별궁에 경제 기반이 부속되었고 또 별궁과 경제 기반을 관리하는 인력이 설치되었는지 궁금하다. 우선 왕실 여성의 별궁에 경제 기반이 부속된 사례로 진성여왕의 북궁이 있다. 조선 성종 21년(1490) 해인사(海印寺)가 중창될 때 9세기경에 작성된 해인사전권(海印寺田券)이 발견되었다. 이 해인사전권은 해인사의 토지 매입 문권(文券)으로, 이 문서를 직접 본 함양군수 조위[曹偉, 생몰 1454~1503]에 따르면 을사(乙巳) 즉 현강왕 11년(885) 이전의 전권에는 단지 ‘북궁해인수(北宮海印數)’라고 칭했다고 한다.³⁰⁾ 이러한 표현은 해인사가 북궁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³¹⁾ 역으로 생각하면 진성여왕의 북궁엔 토지가 수반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왕실 여성의 별궁에 인력이 확인되는 사례로 무열왕의 왕녀 사례가 있다. 그녀가 원효를 만날 때 도움을 준 이가 바로 요석궁의 궁리(宮吏)였기 때문이다.³²⁾ 이렇듯 일부 기록에서 왕실 여성의 별궁을 보유하고 여기에 경제 기반과 인력이 수반된 모습이 확인된다. 다만 이들 사료에서 별궁과 여기에 딸린 경제 기반, 인력이 종합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없다. 다시 말해 북궁장공주의 북궁엔 인력이 보이지 않고, 요석궁공주의 요석궁엔 경제 기반이 부속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신라에서도 왕실 여성에게 궁원을 사여하는 제도가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신라에서 궁원은 경덕왕대 태후 사례를 제외하면 왕녀의 사례에서만 확인된다. 다시 말해 최소한 ‘국왕의 배우자’에게 독립적인 별궁과 경제 기반을 하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을 설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

30) 조위, 「書海印寺田券後」, 『梅溪集』 4.

31) 하일식, 「해인사전권(田券)과 묘길상탑기(妙吉祥塔記)」, 『역사와현실』 24, 1997, 2 1~22쪽.

32)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오히려 성덕왕[재위 707~737]의 왕비 성정왕후(成貞王后)가 폐출될 때, 그녀에게 '강신공의 옛 집'을 사서 이와 함께 채 500필, 전 200결, 조 10만 석을 위자료로 내려 준 사례는³³⁾ 그녀가 왕비로 있을 당시에는 독자적인 별궁과 토지 등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원성왕 1년(785) 전왕(前王)의 왕비인 구족왕후(具足王后)를 외궁(外宮)으로 내보내고 조 3만 4천석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³⁴⁾ 이 사례는 '선왕의 부인'으로서 출궁하게 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경덕왕[재위 742~765]의 선비(先妃)인 삼모부인(三毛夫人)이 출궁 당할 때 '사량부인(沙梁夫人)'으로 봉해졌다는 기록이 주목된다.³⁵⁾ 이 기록에 대하여 이때부터 삼모부인이 사량궁에 살면서 궁에 딸린 재원들을 위자료로 받았다는 견해가 있다.³⁶⁾ 물론 이를 통해 신라에서도 고려와 같이 후비에게 별궁과 경제 기반을 주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삼모부인은 어디까지나 출궁된 폐비 사례이다.

한편 신라에서도 궁주 칭호 3건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 칭호가 후비의 독자적인 궁원의 보유를 전제로 한 칭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동 고승전(海東高僧傳)』에는 미추이사금의 왕녀 또는 늘지마립간의 왕녀로 추

33)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5年 3月.

성덕왕의 왕비인 성정왕후는 왕비 시절 독자적인 별궁을 보유하였지만 출궁 후 별궁을 반납하고 새롭게 강신공의 옛 집을 마련해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왕실 입장에서는 성정왕후가 출궁할 때, 기존의 별궁을 회수하고 새로운 宅을 매입하여 지급하는 것보다는 성정왕후가 기존 별궁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사후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성정왕후에게 굳이 새 저택을 마련해준 것은 왕비 시절 독립적인 별궁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34)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1年 3月.

35) 『三國遺事』卷2, 紀異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36) 김선주,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역사학연구』 44, 2011, 16~17쪽 등.

한편 삼모부인은 沙梁宅 출신이어서 沙梁宮主로 책봉되었던 것이며, 이 책봉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왕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조범환, 『신라 중대 혼인 정치사』, 일조각, 2023, 180~181쪽).

정되는 왕실 여성이 성국궁주(成國宮主)로 표현되고 있고³⁷⁾ 또 소지왕대[재위 479~500] 사금갑(射琴匣) 이야기에 등장하는 궁주가 있다.³⁸⁾ 마지막으로 효소왕대[재위 692~702] 부례랑(夫禮郎)의 어머니를 사량부(沙梁部) 경정궁주(鏡井宮主)로 봉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³⁹⁾ 그런데 고려에서 궁주 칭호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현종 연간[재위 1009~1031]으로,⁴⁰⁾ 오히려 그 이전 시기에는 궁부인·원부인 칭호가 일반적이었다.⁴¹⁾ 만약 신라 여성이 궁의 주인을 뜻하는 칭호로 불렸다면, 궁부인·원부인이 사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궁주 칭호로 불렸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궁의 보유를 전제로 한 칭호인지 아니면 남편의 궁에 살았기 때문에 궁주로 불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⁴²⁾ 추정컨대 신라의 궁주 칭호 사용은 후대인의 관념이 투영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⁴³⁾

현재까지 신라에서 국왕의 배우자 즉 후비가 독립적인 궁원을 보유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후비에게 궁원을 하사하는 현상은 고려시대에 들어와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초 후비의 칭호가 주목된다. 국초 후비는 왕후, 궁부인, 원부인, 부인, 궁인 등으로 불렸는데, 이 가운데 ‘원부인’으로 불린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37) 『海東高僧傳』 卷1, 流通1 釋阿道.

38) 『三國遺事』 卷1, 紀異1 射琴匣.

39) 『三國遺事』 卷3, 塔像4 栢栗寺.

40) 이정란, 앞의 논문, 1996, 185쪽.

41) 고려시대 왕실 여성의 칭호 변천에 대해서는 같은 논문 참고.

42) 속종비 명의태후 류씨는 왕자비 시절에 明福宮主로 불렸다. 당시 明福宮은 명의태후의 궁원이 아니라 그의 남편인 鷄林松熙의 왕자궁이었다(안병우,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208쪽). 다시 말해 그녀는 남편의 궁에 살았으므로 명복궁주로 불렸던 것이다(이정란, 「고려 肅宗妃 明懿太后的 정치적 위상」, 『고려의 왕비 : 내조자와 국모로서의 삶』, 경인문화사, 2015, 124쪽).

43) 권덕영 역시 『花郎世記』에 대한 사료 비판을 가하면서, 宮主 칭호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았다. 권덕영, 「筆寫本 花郎世紀의 史料的 檢討」, 『역사학보』 123, 1989, 169~170쪽.

특히 『고려사』 「후비전」 [이하 「후비전」으로 약칭]에 수록된 태조의 후비 29명 중 18명이 원부인의 이름으로 입전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부록 1 참고). 그리고 태조비 신정왕태후 황보씨가 「후비전」에는 왕태후의 지위로 입전되었으나 생전엔 황주원부인(黃州院夫人)과 명복궁부인(明福宮夫人)으로 불렸다는 사실로⁴⁴⁾ 보아 더 많은 후비가 궁·원부인으로 불렸을 것이다.

이렇듯 궁·원부인은 고려 초 후비의 일반적인 칭호였다. 그렇다면 원부인 칭호가 실제 궁원의 보유를 전제로 한 칭호인지 아니면 단지 상징적인 칭호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의문점을 태조비 소서원부인(小西院夫人) 김씨(金氏)와 대서원부인(大西院夫人) 김씨(金氏) 사례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한다.

A. [소서원부인 김씨] 또한 김행파의 딸이다. … 태조가 서경에 행차하자 김행파는 사냥꾼들을 거느리고 길에서 알현하고서 그 집에 이르기를 요청하여, 이를 밤을 머무는 동안 두 딸을 각각 하룻밤씩 모시게 하였다. 훗날 다시 행차하지 않자 두 딸은 모두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태조가 불쌍히 여겨 불러서 만나보고 말하기를, “그대들이 이미 출가하였으니 뜻을 빼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경에 명을 내려 성 안에 대서원(大西院)과 소서원(小西院) 두 절을 짓게 하고 전민(田民)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각각 살게 하였으므로 대서원부인과 소서원부인으로 일컬은 것이다.⁴⁵⁾

위 사료 A는 태조비 소서원부인에 대한 「후비전」 기록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소서원부인은 또 다른 태조비 대서원부인과 자매 사이로, 이들은 김행파의 딸이다. 김행파는 태조의 서경 경영의 일환인 사민 정책에 따라

44) 이정란, 「高麗 后妃 號稱에 관한 考察」, 『典農史論』 2, 1996, 170~171쪽.

45)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太祖 小西院夫人, “亦行波之女 … 太祖幸西京 行波率獵徒道謁 請至其家 留信宿 以二女 各侍一夜 後不復幸 二女皆出家爲尼 太祖憐之 召見曰 爾等既出家 志不可奪也 命於西京 城中 作大小西院兩寺 置田民 令各居之 故稱大小西院夫人”

동왕 5년(922)에 가족을 이끌고 서경으로 이주하였다.⁴⁶⁾ 위 기록에 따르면 김행파의 두 딸은 태조가 서경에 행차했을 때 하룻밤씩 태조를 모시게 된 인연이 있었는데, 후일 태조가 다시 찾지 않자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소식을 듣게 된 태조는 서경 성 안에 두 개의 사찰을 짓고 각각 그곳에 살게 하면서 대서원부인과 소서원부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듯 대서원부인과 소서원부인의 이름은 각각 서경에 위치한 대서원(大西院)과 소서원(小西院)이라는 건물을 전제로 한 칭호였다.

그리고 대서원과 소서원의 원(院)과 함께 전민(田民)의 하사가 주목된다. 이때 전민은 무엇일까. 전민은 전(田)을 경작하는 민(民) 그 자체를 가리키거나 전(田)과 민(民)의 합성어일 수 있는데, 후자가 아닐까 싶다. 태조는 23년(940) 역분전 시행⁴⁷⁾ 이전에도 공신과 지방 유력자 또는 후백제·신라·발해의 왕족으로서 고려에 귀부 혹은 내투한 자에게 토지를 하사하였다. 대표적으로 신승겸과 복지겸은 각각 연고지의 전 300결을 하사받았고,⁴⁸⁾ 고사달이성(高思葛伊城)의 성주 흥달은 청주의 녹읍(祿邑) 외에도 전택(田宅)을 하사받았다.⁴⁹⁾ 그리고 이들이 받은 토지는 수조지(收租地)로 이해된다.⁵⁰⁾ 또한 태조는 통일전쟁 중에 자신을 도운 승려가 속한 사원 또는 자신이 직접 창립한 사원에 사원전(寺院田)을 분급해 주었다.⁵¹⁾ 그러므로 대·소서원이 설치될 때, 전(田)과 민(民)이 함께 지급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때의 전(田)과 민(民)의 성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사료의 부족으로 알기 어렵다.⁵²⁾

46)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5年.

47) 『高麗史』卷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48) 『新增東國輿地勝覽』卷41, 黃海道 平山都護府 人物 申崇謙; 『新增東國輿地勝覽』卷19, 忠清道 沔川郡 人物 卜智謙.

49) 『高麗史』卷92, 世家5 列傳5 諸臣 興達.

50) 노명호, 「羅末麗初 豪族勢力의 경제적 기반과 田柴科體制의 성립」, 『진단학보』 74, 1992, 26쪽.

51) 이병희, 「高麗前期 寺院田의 分給과 經營」, 『한국사론』 18, 1988, 33~37쪽.

52) 田의 경우 토지에 대한 所有權 혹은 토지에 대한 收租權일 것이다. 高思葛伊城의

또 대·소서원의 성격이 후비의 궁원인지 아니면 비구니의 사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시 말해 대·소서원부인이 대·소서원을 하사받을 때, 그들의 자격이 국왕의 배우자인지 출가한 비구니인지 알 수 없다. 우선 이들이 「후비전」에 수록되었던 만큼, 국왕의 배우자로서 해당 궁원을 지급받았을 수도 있지만, 사료 A에서 대서원과 소서원을 가리켜 사원[寺]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 별궁을 회사하여 사원을 삼는 일이 빈번하였던 점과⁵³⁾ 궁원전과 사원전이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는 견해를⁵⁴⁾ 참고한다면, 대·소서원이 후비 궁원인지 사원인지 여부를 떠나 이후 시기 후비의 궁원 제도의 전신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듯 고려 초 원부인 칭호는 원(院)의 보유를 전제로 한 칭호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왕녀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려 초 왕녀 또한 궁·원 부인 칭호를 사용하였는데, 태조의 장녀인 낙랑공주(樂浪公主)는 생전에 신란궁부인(神鸞宮夫人)으로 불렸다고 한다.⁵⁵⁾ 잘 알려져 있듯이 낙랑공주는 태조 18년(935) 11월에 신라 경순왕 김부와 혼인하였는데,⁵⁶⁾ 약 한 달 뒤에 태조는 경순왕에게 신란궁(神鸞宮)을 창건하여 하사하였다.⁵⁷⁾ 이로 보아 신란궁은 두 사람의 신혼집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낙랑공주는 남편과 함께 신란궁에 살았기 때문에 신란궁부인으로 불렸을 것이다. 신란궁부인 역시 신란궁이라는 건물을 전제로 한 칭호였다.⁵⁸⁾

城主 興達이 받은 토지가 수조지라는 견해와 고려 초 사원전 역시 수조지라는 견해에 주목하면, 大·小西院의 田地 역시 수조지일 가능성 있다. 또한 民의 경우 토지를 경작하는 民으로 이해하여 莊田의 莊戶일 수도 아니면 奴婢일 수 있다. 하지만 田·民 모두 사료의 부족으로 단정할 수 없다.

53)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1998.

54) 박종진, 「高麗初 公田·私田의 性格에 대한 재검토 : 顯宗代 〈義倉租收取規定〉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0-4, 1984, 87쪽.

55) 『高麗史』 卷91, 列傳4 公主 太祖 安貞淑儀公主.

56)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8年 11月 癸丑.

57)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8年 12月 壬申.

이상으로 태조비 대·소서원부인과 태조의 왕녀 낙랑공주 사례를 통해 고려 초 궁·원부인은 본궐 밖에 위치한 ○○궁과 ○○원이라는 건물을 전제로 한 칭호였음을 확인하였다.⁵⁹⁾ 또 대·소서원부인에게 건물을 하사할 때 전민(田民)으로 표현된 경제 기반이 함께 사여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태조대 모든 후비에게 경제 기반이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태조대 경제 기반으로 전민(田民)을 수반한 후비 궁원의 시원적 모습이 확인된다.

2. 후비 궁원의 등장 배경

국왕의 배우자가 독립적인 궁원을 보유하는 현상은 고려 초부터 확인된다. 예컨대 태조비 대서원부인은 대서원을, 소서원부인은 소서원을 보유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왜 하필 태조 연간에 출현하였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다.

태조의 혼인 정책으로 맞이한 후비들은 대체로 태조와 혼인 이후 개경에 살았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서원부인과 소서원부인은 태조와의 만남이 일회성에 그쳐 서경에 살았지만, 다수의 후비들은 본향(本鄉)을 떠나 수도에 살았을 것이다.⁶⁰⁾ 이러한 사실은 태조의 제17비 동산원부인(東山院

58) 신란궁은 본궐 밖 동쪽의 노군교 부근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松京廣攷』卷5, 第宅 金溥第.

59) 대·소서원의 경우 개경이 아닌 서경에 위치하였는데, 이는 태조 당대에도 예외적인 사례로 보인다.

60) 일찍이 宮으로 불린 宮院은 개경에, 院으로 불린 宮院은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대다수의 후비는 자신의 본향에 살았을 것이라는 견해(李泰鎮, 「金致陽 亂의 性格 : 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7, 1977, 69쪽의 각주 2)와 大·小西院夫人을 제외한 후비들은 대체로 개경에 살았을 것이라는 견해(김창현, 「고려시대 후비궁과 왕녀궁」,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景仁文化社, 2011, 333쪽)가 제시되었다. 후자의 경우 그 가능성은 제시하였을 뿐 특별히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따른다.

夫人) 박씨(朴氏)와 정종(定宗)의 제1비 문공왕후 박씨, 제2비 문성왕후 박씨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세 명의 후비는 자매 사이로, 부친인 박영규가 고려에 귀부할 때 함께 개경으로 이주했던 것 같다.

우선 「열전」 박영규 조항을 살펴보겠다.

B. [박영규] 승주(昇州) 사람이다. 견훤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견훤의 장군이 되었다. … 태조 19년(936) 2월에 박영규는 마침내 사람을 보내 귀순 의사를 밝혔다. … 9월, 태조가 신검을 토벌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박영규에게 말하기를, “견훤이 나라를 잊고 멀리 온 이후로, 그의 신하들 가운데 아무도 위로하거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오직 경 부부 만이 천리 밖에서 소식을 이어 성의를 보내고, 아울러 과인에게 귀순 의사를 밝혔으니 그 의리를 잊을 수 없도다”라고 하였다. 〈박영규를〉 좌승(佐丞)에 임명하고, 전 1,000경을 하사하였다. 역마 35필로 집안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의 두 아들에게도 관직을 주었다. …⁶¹⁾

승주인(昇州人) 박영규는 견훤의 사위로 태조 18년(935) 6월 장인이었던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자⁶²⁾ 이듬해 2월에 태조에게 사람을 보내어 귀부를 청하였다. 이때 박영규가 곧바로 개경으로 이주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태조 19년(936) 9월에 고려와 후백제의 마지막 전투인 이른바 일리천전투로 고려가 승리하자, 태조는 박영규를 좌승(佐丞)에 임명하고 전 1,000경을 하사하면서 역마 35필을 보내어 박영규와 함께 집안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하였다. 이때 개경으로 온 집안사람들 가운데 박영규의 세 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즉 태조 19년 9월에 개경으로 올라온 후 태조와 왕자 요[堯, 후일의 定宗]의

61)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朴英規, “昇州人 娶甄萱女 爲萱將軍 … 太祖十九年二月 英規遂遣人歸款 … 九月 太祖討神劍 滅百濟 謂英規曰 自萱失國遠來 其臣子無一人慰籍 者 獨卿夫婦 千里嗣音 以致誠意 兼歸款於寡人 義不可忘 授以佐丞 賦田千頃 以驛馬三十五匹 迎致家人 官其二子 …”

62)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8年 6月.

후비가 되었을 것이며,⁶³⁾ 이후 개경에 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영규의 세 딸 가운데 궁원의 존재가 확인되는 태조비 동산원부인 박씨의 동산원(東山院)은 개경에 위치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 외에도 제4비 신성왕태후 황보씨의 황주원(黃州院)과 제5비 신성왕태후 김씨의 대량원(大良院) 또한 개경에 있었다. 먼저 황주원은 경종대 명복궁으로 개호(改號)되는데,⁶⁴⁾ 현종대 국왕의 행궁으로 사용되므로⁶⁵⁾ 개경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대량원은 신성왕태후 사후에 아들인 안종(安宗) 육(郁)에게 상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⁶⁶⁾ 안종의 집 즉 대량원은 왕륜사 남쪽에 위치하였다고 하므로⁶⁷⁾ 개성 중심부에 위치하였을 것이다.⁶⁸⁾

태조의 모든 후비가 수도에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후비들은 본향을 떠나 정치의 중심지인 개경에 머물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초의 본궐은 태조의 후비들을 다 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조는 전국 이듬해 송악 천도를 결정하였고, 이 시기의 본궐은 궁예의 고려·마진의 것을 활용하였다.⁶⁹⁾ 궁예는 철원을 떠나 송악으로 천도한 898년부터 다시 철원으

63) 정용숙, 『高麗王室族內婚研究』, 새문사, 1988, 73~80쪽.

64) 『高麗史』卷2, 世家2 景宗 1年 6月 庚申.

65) 『高麗史』卷4, 世家4 顯宗 5年 8月 己巳 ; 같은 책, 顯宗 7年 2月 己丑.

66) 신성왕태후에게는 안종을 제외한 왕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대량원은 안종에게 상속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안종의 아들이자 신성왕태후의 손자인 王詢 즉 현종이 小君이 되기에 앞서 '大良院君'으로 책봉 받았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高麗史』卷4, 世家4 顯宗總序). 그러므로 대량원은 태조대 신성왕태후의 궁원이었다가 왕태후 사후 성종대 안종에게, 그리고 다시 목종대 현종에게 상속되었을 것이다.

67)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1 景宗 獻貞王后 皇甫氏.

68) 왕륜사는 北部 王輪坊에 위치하였는데(『高麗史』卷56, 志10 地理1 王城 開城府), 왕륜방은 개경 중심부라고 한다(박종진, 「고려시기 개경 절의 위치와 기능」, 『역사와현실』 38, 2000, 78쪽).

69) 김창현, 「고려 개경의 도성 구조와 궁성 : 도성 구조의 완성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79, 2020.

로 돌아가는 905년까지 약 7년 동안 송악을 수도로 삼았다. 기록상 궁예의 후비로 부인 강씨만이 확인될 뿐⁷⁰⁾ 궁예는 태조만큼 많은 수의 후비를 거느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궁예의 본궐을 계승한 국초의 본궐은 태조의 후비 29명과 왕자녀 34명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종대 최승로는 <오조치적 평>에서 “궁실을 낮게 하여 겨우 비바람만 가렸다”라고 하였다.⁷¹⁾ 이는 당연히 태조의 근검절약 정신을 말한 것이겠지만, 그만큼 본궐이 미비하였음을 암시한다.

이른바 ‘만월대’라 불리는 고려 본궐 유적은 크게 서부 건축군, 회경전 영역의 중심 건축군 그리고 동부 건축군으로 구분된다. 각 구역별로 사용된 자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서부 건축군의 경우 1~4문화층으로 이루어졌으며, 1문화층 건축에 쓰인 자는 35.3cm 정도의 고구려 계열의 자가, 2문화층부터는 31.5cm 정도의 자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심 건축군의 주요 전각인 회경전에서는 31.5cm 정도의 자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제1문화 층이 있는 서부 건축군이 초기의 본궐 유적이라고 하였다.⁷²⁾ 실제로 2000년 대 진행된 남북 공동 발굴 조사 결과 서부건축군 내 추정 건덕전 중심의 서쪽 일곽만이 태조 연간 영역으로 파악되고 있다.⁷³⁾ 그리고 추정 건덕전 건물지군은 총 5개의 건물지로 구성되었는데, 동서 6,500cm, 남북 4,000cm에 불과하다.⁷⁴⁾ 고고학 발굴 결과를 통해서도 태조대 본궐 영역은 태조의 가족을 수용하기에 매우 협소했음을 알 수 있다.

70) 『三國史記』卷50, 列傳10 弓裔.

71) 『高麗史』卷93, 列傳6 諸臣 崔承老.

72) 장상렬, 「고려왕궁 : 만월대 건축에 쓴 측도기준」, 『고고민속론문집』 11, 198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73) 고려 본궐 유적 가운데 회경전 영역의 중심 건축군 그리고 동부 건축군은 현종 연간에 신축된 것으로 이해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 조사보고서』 I, 2012, 48쪽). 그렇다면 태조~목종대에는 서부 건축군 구역만이 국초 본궐 건물임을 알 수 있다.

74)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 2015, 40쪽.

그 결과 태조의 후비 29명 가운데 7인을 제외한 22명의 후비가 자신의 궁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대·소서원부인의 사례처럼 태조와의 만남이 일회성에 그쳤을 수도 있고 이들 궁원이 모두 개경에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대체로 개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태조 즉위 후 맞이한 후비들은 정략혼인이었고 대체로 태조의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을 위해서라도 후비들은 개경에 머물러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조와 혼인을 위해 본향을 떠나 개경에 머물게 된 후비들은 머무를 공간이 필요했고 또한 본궐의 미비 속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궁원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는 적극적으로 후비를 맞이하였다. 더욱이 아들인 혜종과 정종(定宗)의 혼인도 정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태조 연간 개경에는 자신의 본향을 떠나온 후비들이 이십여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후비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본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별궁을 마련한 것이 궁원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궁원은 어디까지나 고려 국초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다.

III. 경종~목종대 후비 궁원의 정비

1. 경종대 궁원의 개호(改號)

국왕의 배우자 즉 후비가 독립적인 별궁 건물과 경제 기반을 하사받는 현상은 고려 초 특수한 상황에서 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어느 시점에 정비되어 하나의 제도로서 고려 사회에 정착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후비 궁원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경종 이후 후비 궁원의 개호(改號)와 목종대 궁관(宮官)의 등장에 주목하여 후비 궁원 제도의 정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경종 연간[재위 975~981] 이후의 후비 궁원은 이전 시기의 후비

궁원과 다른 점이 확인된다. 바로 궁원의 이름이 아화(雅化)된 표현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태조~정종(定宗) 연간 후비 궁원은 대체로 황주원, 대량원 등과 같은 지명(地名)으로 이름하였다.⁷⁵⁾ 이 지명은 후비의 본향 또는 비부(妃父)의 관직 이력지 등으로 후비와 유관한 지명이었다.⁷⁶⁾ 그런데 경종 이후의 후비 궁원은 명복궁(明福宮), 숭덕궁(崇德宮)과 같이 명(明), 복(福), 덕(德) 등 아화된 표현으로 이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이러한 후비 궁원의 변화는 아무리 늦어도 경종 연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료 C는 후비 궁원의 개호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편년 기록이다.

C. [경종 원년(976) 6월] 황주원의 두 낭군에게 원복을 가해주고, 원(院)의 이름을 고쳐 명복궁이라 하였다.⁷⁷⁾

위 사료 C는 태조비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궁원 개호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녀는 황주 출신으로 태조와의 사이에서 대종(戴宗) 육(旭)과 광종비 대목왕후를 출산하였으며⁷⁸⁾ 태조 당대에 황주원을 보유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75)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태조의 후비 가운데 궁원 보유가 확실한 사례는 22건이다. 여기에 더해 혜종비 後廣州院夫人 王氏, 혜종비 清州院夫人 金氏, 定宗비 清州南院夫人 金氏가 보유한 後廣州院, 清州院, 清州南院이 있었다. 종합하면 국초 후비 궁원은 25개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 궁원을 분석하면 25개 가운데 18개 궁원은 후비와 관련 있는 지명으로 이름하였다.

한편 태조대 후비 궁원 가운데 輿福院, 月華院, 月鏡院, 夢良院과 같이 아화된 이름의 궁원도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들 궁원명은 태조 당대의 궁원명으로 지명으로 부르는 궁원명 이외의 별칭인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개호된 궁원명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태조~광종대 대부분의 후비 궁원은 지명으로 이름하였으며, 이는 당대에 사용된 이름이었다.

76) 이정란, 앞의 논문, 1996, 172~176쪽.

77) 『高麗史』卷2, 世家2 景宗 1年 6月 庚申, “黃州院二郎君 並加元服 改院號 爲明福宮”

78)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1 太祖 神靜王太后 皇甫氏.

다. 그리고 그녀는 광종 20년(969) 아들 대종 육이 사망하자⁷⁹⁾ 그의 자녀들을 자신의 궁원에서 양육하였다.⁸⁰⁾ 한편, 위 자료 C에서 알 수 있듯이 경종 원년(976)에 국왕은 황주원에 살고 있었던 두 낭군의 관례를 행하였는데 이때 황주원을 원(院)에서 궁(宮)으로 승격하면서 ‘황주’에서 ‘명복’으로 궁호를 변경하였다. 이는 경종이 자신의 외조모인 신정왕태후를 우대하기 위함일 것이다.⁸¹⁾

이처럼 후비 궁원의 개호 작업은 경종 원년부터 시작된다. 태조비 신정왕 태후의 궁원 이름을 황주에서 명복으로 개호한 이후 고려의 후비 궁원은 더 이상 지명으로 이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경종 이후의 후비 궁원은 연경(延慶), 연덕(延德)과 같이 아화된 이름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아화된 표현+궁원’은 고려 사회에 정착하였다.

그런데 아화된 이름으로 궁원의 이름을 짓는 방식은 경종 이전 시기에도 확인된다. 일찍이 ‘후비’가 아닌 ‘국왕의 왕자녀’의 궁원은 이미 아화된 표현으로 이름하였다. 예컨대 혜종[재위 943~945]의 왕자녀는 흥화궁(興和宮)과 경화궁(慶和宮)을 보유하였다. 먼저 흥화궁은 혜종의 왕자인 흥화궁군(興和宮君)의 궁원이고⁸²⁾ 경화궁은 혜종의 왕녀로 후일 광종의 후비가 되는 경화 궁부인(慶和宮夫人)의 궁원이다. 두 궁원에서 공통적으로 ‘화(和)’자가 보여 부왕 연간에 주어진 남매 궁원이 아닐까 싶다.⁸³⁾ 또 정종[定宗, 재위

79) 『高麗史』 卷2, 世家2 光宗 20年 11月.

80)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太祖 神靜王太后 皇甫氏.

81) 한편 궁호 변경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후비전」에 이때의 일과 관련하여 “처음에 명복궁대부인으로 봉해졌다”라며 책봉 기록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太祖 神靜王太后 皇甫氏). 이때의 책봉이 ‘명복궁의 주인’으로서의 책봉인지, ‘대부인’으로서의 책봉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에 대한 책봉인지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고려 왕실 구성원에 대한 책봉제가 현종 연간에 정비 및 정착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82) 『高麗史』 卷90, 列傳3 宗室1 惠宗 興化宮君.

83) 현종의 후비이자 김은부의 두 딸인 원성왕태후 김씨와 원혜태후 김씨는 각각 延慶宮

945~949]의 유일한 왕자인 경춘원군(慶春院君)은 경춘원(慶春院)을 보유하였는데,⁸⁴⁾ 그는 광종 연간에 경춘원을 하사받아서 보유했던 것으로 짐작된다.⁸⁵⁾

태조~광종대 왕자녀의 궁원은 지명이 아니라 아화된 표현으로 이름하였다. 또한 왕자녀의 궁원 이름은 당대의 표현이었다. 동일한 시기의 후비 궁원이 지명으로 이름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그렇다면 후비 궁원의 이름은 사료 C의 태조비 신명순성왕태후 사례로 보아 경종 연간부터 변경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 시기 왕자녀 궁원 명명 방식을 따라 궁호 변경 작업이 시행되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왜 하필 후비 궁원의 궁호 변경이 경종 연간에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우선 광종 연간에는 본궐의 대대적인 증축 공사가 시행되었다. 광종은 즉위 11년(960)에 개경을 황도(皇都)로, 서경을 서도(西都)로 고쳤다.⁸⁶⁾ 그리고 이듬해 궁궐도감(宮闕都監)을 설치하였고⁸⁷⁾ 왕이 정광 왕육의 집으로 옮겨 가면서까지 대대적인 본궐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다.⁸⁸⁾ 이 중수 사업은 약 2년 2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⁸⁹⁾ 이는 고려 건국 후 처음으로 시행된 대대적인 공사였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정치 공간으로 장생전(長生殿), 원화전(元和殿), 험덕전(含德殿) 등이 새롭게 건설되었다.⁹⁰⁾ 이처럼 본궐

과 延德宮을 보유하였다. 두 궁원은 자매에게 주어졌고 공통적으로 '延'字가 확인되고 있어서 자매 궁원으로 이해된다.

84) 『高麗史』卷90, 列傳3 宗室1 定宗 慶春院君.

85) 慶春院君은 定宗 사망 당시에 13세보다 더 어렸을 것으로 보인다(김선미, 『高麗前期王位繼承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62쪽). 또 광종 말년에 유력자 및 왕실 일원에 대한 숙청을 단행할 때 경춘원군이 사망하였던 것(『高麗史』卷90, 列傳3 宗室1 定宗 慶春院君)으로 보아, 그가 경춘원을 보유한 시점은 광종 연간일 것이다.

86) 『高麗史』卷2, 世家2 光宗 11年 3月.

87) 『高麗史』卷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88) 『高麗史』卷2, 世家2 光宗 12年 2月.

89) 『高麗史』卷2, 世家2 光宗 14年 6月.

의 재건축은 국왕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후비들을 수용할 내전(內殿)도 정비되어 후비들은 자신들의 궁원이 아니라 본궐 내에 기거하게 되었을 것이다. 국초 후비 궁원은 본궐의 미비 속에서 본향을 떠나 개경으로 온 여러 후비들의 실제 거주지로 제공되었다. 하지만 광종 연간의 대대적인 본궐 증축 공사로 인해 본궐 내에 여러 후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종비 현정왕후 황보씨가 경종이 흥서하자 사제(私第)에 나와 살았다는 기록을⁹¹⁾ 통해 알 수 있다. 현정왕후가 출궁하였다는 사실은 곧 경종 생전에는 부왕(夫王)과 함께 본궐에 살았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광종대 본궐 증축 공사 이후부터 후비들은 자신의 궁원이 아니라 본궐에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후비 궁원은 더 이상 후비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국왕과 후비가 잠시 체류하는 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왕실 별궁’의 위상에 적합한 궁원 이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한편 경종 연간에는 시정 전시과의 시행, 봉작제의 정비 등 고려의 정치 제도가 정비된 시기이다.⁹²⁾ 이러한 경종대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후비 궁원의 개호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고려 초 후비 궁원의 궁호는 후비의 출신지 또는 연고지를 궁원명에 사용하였는데, 경종 이후 왕자녀의 궁원명에만 사용되었던 아화된 표현을 후비 궁원에 적용함으로써 후비 궁원이 왕실의 궁원이라는 위상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닐까 싶다.⁹³⁾

90) 홍영의, 「고려시기 개경의 궁궐 조영과 운영」,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297쪽.

91)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景宗 獻貞王后 皇甫氏.

92) 김대식, 「고려초기 중앙관제의 성립과 변화」, 『고려 중앙정치제도사의 신연구』, 혜안, 2009 ; 황향주, 「고려 태조~목종대 왕실의 편제 : 왕실 남성의 ‘태자(太子)’·‘군(君)’칭호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7, 2022.

93) 경종 연간에는 왕실 일원, 특히 남성에 대한 편제가 시행된 시기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왕조가 개창된 이후 고려 왕실은 ‘왕족의 범주’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다. 즉 골품제로 왕족의 범주가 한정되었던 신라와는 달리 골품제의 봉고 위에 세워진

2. 목종대 궁관(宮官)의 출현과 배경

고려시대 후비 궁원에는 사, 부사, 녹사 등 궁관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사』「백관지」의 제궁전관(諸宮殿官) 조항과 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舉司) 조항 그리고 「식화지」 권무관(權務官) 녹봉(祿俸)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백관지」 제궁전관 조항을 통해 고려의 궁(宮)과 전(殿)엔 사, 부사 등의 관직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고⁹⁴⁾ 「백관지」 연경궁제거사 조항을 통해 연경궁에 설치된 궁관의 종류와 수, 시기별 변천 내용 등을 알 수 있다.⁹⁵⁾ 마지막으로 궁관의 녹봉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식화지」 권무관 녹봉 조항이다.⁹⁶⁾ 이 자료들로 말미암아 후비 궁원에 궁관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궁관은 후비 궁원의 정비 과정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려 건국 직후 후비 궁원에 궁관이 존재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일찍이 신라에서는 왕실 별궁에 사인(舍人) 등의 관리를 설치하였다. 대표적으로 진평왕대[재위 579~632] 겸군(劍君)은 사량궁의 사인으로,⁹⁷⁾ 사량궁의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이해된다.⁹⁸⁾ 또 앞서 살펴본 요석궁공주의

고려라는 신왕조는 새롭게 왕족을 범주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갖게 된 것이다. 이에 경종 연간에는 왕실 추증 제도를 정비하여 자신과 친속 관계에 있던 선대 왕자를 大王으로, 그 외 왕자를 太子로 추증하였다(황향주, 위의 논문, 2022).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편제도 시행되었을 것이다. 즉 후비 궁원의 개호를 통해 '혼인'을 매개로 고려 왕실과 연고를 맺게 된 국왕의 배우자도 왕실 일원의 범주로 편입 혹은 편제되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94)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諸宮殿官.

95)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延慶宮提舉司.

96)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祿俸 權務官祿.

97) 『三國史記』 卷48, 列傳8 劍君.

98) 연구자들은 사량궁사인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량궁사인 이 사량궁의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李京燮, 「신라 上代의 稟主와 內省 - 國家 및 王室의 財政構造 變遷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208쪽 등이 있다.

요석궁에는 궁리가 존재하였다.⁹⁹⁾ 이처럼 신라에서는 별궁에 각 궁의 경제 기반을 관리하고 여러 잡무를 담당했던 인력이 설치되었다.

신라에서 별궁에 관리를 두었던 제도는 고려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의 견훤이 투항해 오자 남궁(南宮)을 관소로 제공하고 식읍을 하사하며 이와 함께 아관(衙官)을 두었다.¹⁰⁰⁾ 아관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¹⁰¹⁾ 견훤에게 주어진 남궁과 경제 기반을 관리하는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라의 경순왕이 귀부해 오자 태조는 신란궁을 창건하여 하사하였으며 이와 함께 식읍과 녹봉을 주었다. 또 경순왕의 종자(從者)들을 관리로 받아들여 전론(田祿)을 주었는데,¹⁰²⁾ 이 종자들은 견훤의 사례로 말미암아 아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고려 초 후비 궁원에도 신라의 사인 또는 남궁과 신란궁의 아관과 같은 관원이 설치되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신라의 제도로 영향을 받아 국초부터 후비 궁원에 궁관을 두었으나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국초 후비 궁원은 궁원 주인의 측근 또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달하여 궁원을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고위 관료 가문에서 측근으로 하여금 가택(家宅)의 관리와 경제 기반에서 수취를 일임하는 사례는 종종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태조는 동왕 17년(934)에 예산진을 찾아 공경(公卿)이나 장상(將相)의 녹읍에서 그들의

99)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100)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8年 6月.

101) 衙官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태조 5년(922)에 西京留守官으로 衙官이 설치되었고, 이때 아관은 방언으로 豪幕을 뜻한다(『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外職 西京留守官). 또는 衙官은 宮院에 설치된 하급 宮官일 수도 있다(『高麗史』, 卷65 志19 禮7 元子誕生賀儀). 그러므로 衙官이 궁원에 설치된 관청으로서의 아관일 수도 아니면 궁관으로서 아관일 수도 있다. 다만 사료의 부족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다.

102)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8年 12月 壬申.

‘가신(家臣)’들이 약탈하듯 수조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¹⁰³⁾ 이때 가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기 어렵지만, 공경과 장상들은 가신을 녹읍에 파견하여 조세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 인종대 이자겸은 중홍택(重興宅)을 보유하였는데, 가신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중홍택의 집사(執事)로 김의원(金義元)과 최자성(崔滋盛)를 두었다.¹⁰⁴⁾ 두 사람은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고 인종을 중홍택으로 이어시킬 때, 중홍택의 집사로서 국왕을 맞이하였다. 고종~원종대 김인준(金仁俊)은 농장(農莊)을 설치하여 가신 문성주(文成柱)로 하여금 전라도를, 또 다른 가신인 지준(池濬)으로 하여금 충청도를 관리하게 하였다.¹⁰⁵⁾

이는 왕실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성종 연간 태조의 왕자인 안종 육의 사제에는 가인(家人)이 확인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안종과 경종비 현정왕후 황보씨는 경종 사후 사통 관계로 발전하였다. 성종 11년(992) 현정왕후가 안종의 사제에 머물자, 가인들이 뜰에 장작을 쌓아서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 불길을 본 성종과 백관들이 안종의 사제를 찾았고, 성종은 가인의 보고로 안종과 현정왕후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가인들이 왜 불을 피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재 사건이 안종의 사제에서 발생한 점에서 가인들은 안종 사제에 출입이 가능한 인물들이 있을 것이다. 가인은 안종의 사제에서 여러 잡무를 보는 인력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고려 초 후비 궁원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 초 후비 궁원은 궁원의 관리를 담당한 인력을 궁원의 주인 또는 친정 가문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가인, 가신, 집사 등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신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인 또는 후대에 보이는 궁사, 궁부사 등이 궁원에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기록상

103)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7年 5月 乙巳.

104) 『高麗史』 卷127, 列傳40 叛逆 李資謙.

105) 『高麗史』 卷130, 列傳43 叛逆 金俊.

조정에서 파견한 궁관이 보이는 가장 이른 사례는 목종대 확인된다.¹⁰⁶⁾ 우선 관련 사료부터 검토하겠다.

- D-1.** … 장연현(長淵縣) 사람인 문인위(文仁渭)라는 자는 성실하고 진솔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천추궁사(千秋宮使)로 있었다. 김치양이 처형당함에 미쳐서 많은 궁료(宮僚)들이 연좌되어 처형당하거나 유배되었으나 유독 문인위는 강조(康兆)의 비호로 죄를 면하였고 관직이 상서좌복야에 이르렀다.¹⁰⁷⁾
- D-2.** [현종 10년(1019) 3월]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문인위(文仁渭)가 사망하였다. 문인위는 진솔하고 꾸밈이 없었다. 목종 때에 천추궁사가 되었는데, 김치양(金致陽)이 주살되자 궁료 대부분이 연좌되어 죽거나 유배되었으나 문인위만은 홀로 강조의 비호를 받아 화를 면하였다.¹⁰⁸⁾

위 사료 D군은 궁사(宮使)가 보이는 가장 이른 기록이다. 먼저 사료 D-1에 의하면, 장연현 사람인 문인위[文仁渭, 생몰 ?~1019]는 오랫동안 천추궁사(千秋宮使)를 역임했으며 목종 12년(1009)의 정변 당시 김치양이 처형당할 때 강조의 비호를 받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천추궁은 바로 목종의 모후 현애왕태후의 궁원인 숭덕궁의 별칭으로, 천추궁사 또한 숭덕궁사(崇德宮使)의 별칭이었을 것이다. 즉 경종비 현애왕태후의 궁원에는 ‘궁사’의 관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문인위가 살아남았던 것과는 달리 다른

106) 「백관지」의 제궁전관 조항과 연경궁제거사 조항에 따르면 궁관은 문종 연간에 제정되었다고 한다(『高麗史』卷77, 志31 百官2 延慶宮提舉司). 그러나 궁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했던 궁관은 아무리 늦어도 목종 연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07) 『高麗史』卷127, 列傳40 叛逆 金致陽, “… 有長淵縣人文仁渭者 憶幅無華 久爲千秋宮使 及致陽誅 宮僚多連坐誅竄 獨仁渭以兆之庇獲免 官至尙書左僕射”

108) 『高麗史節要』卷3, 顯宗 10年 3月, “尙書左僕射文仁渭卒 仁渭憇幅無華 穆宗朝爲千秋宮使 及誅金致陽 宮僚多連坐誅竄 仁渭獨以康兆之庇獲免”

궁료들은 연좌되어 처형 혹은 유배당했다는 것으로 보아, 궁사 외에도 다른 궁관직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료 D-2는 현종 10년(1019) 문인위의 사망 기록으로, 문인위의 천추궁사 역임 시기를 알 수 있다. 즉 이 기록에는 문인위가 천추궁사가 된 것은 목종 연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사료 D-1에서는 문인위가 ‘오랫동안’ 천추궁사였다고 한다. 목종의 재위 기간은 약 12년으로, 두 사료를 종합하면 문인위는 목종 즉위 초부터 천추궁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궁사 등의 궁관은 기록상 목종대부터 확인되지만 이보다 앞서 성종 연간에 정비된 것이 아닐까 싶다. 궁관은 권무직의 하나였다. 고려시대 권무직은 품관과 이속 사이에 위치한 관료로¹⁰⁹⁾ 행정의 실무에 종사하였다.¹¹⁰⁾ 이러한 권무직은 일찍이 국초부터 시행되었으며 성종대 관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권무직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¹¹¹⁾ 그렇다면 궁관 역시 관련 기록은 목종대 처음 등장하지만, 성종대 이미 정비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종 연간에 궁관이 정비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선 궁관은 궁원에 부속된 궁원전, 장전(莊田) 등의 경제 기반에서 수조하고 또 궁원의 생활 환경과 치안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궁관은 직무의 대가로 중앙재정에서 녹봉을 받았고¹¹²⁾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 품관으로 승진할 수도 있었다. 궁관은 궁원 주인의 편의를 위한 여러 업무를 담당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앙의 관료였다. 즉 궁관은 조정의 관료로서 궁원에 파견되

109) 권무관의 성격에 대해 크고 작은 논쟁이 있지만, 권무관이 품관과 이속직 사이에 위치한 관료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김광수, 「고려시대의 권무직」, 『한국사연구』 30 등이 있다.

110) 박용운, 「관직과 관계」, 『신편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2003, 120쪽.

111) 김광수, 앞의 논문, 1980, 39~40쪽.

112)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祿俸 權務官.

어 궁원을 관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 건국 후 중앙집권적 체제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궁원의 경제력을 국가 또는 왕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원을 파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¹¹³⁾

또한 궁원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의 창업군주 태조는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왕조의 앞날을 염려하며 사왕(嗣王)들의 지침서인 훈요십조를 남겼다. 그 가운데 8조는 등용 불가 조항으로, 그 대상은 ‘차현이남(車峴以南) 공주강외(公州江外)의 주현인’과 ‘일찍이 官寺에 속한 노비와 진(津)·역(驛)의 잡척(雜尺)’이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훗날 왕후(王侯)와 궁원에 붙어서 권력을 희롱하고 정사를 어지럽힐까 걱정하였고, 비록 양인이더라도 등용하지 말 것을 유훈으로 남겼다.¹¹⁴⁾ 태조는 일찍이 관과 사찰에 속한 노비와 진·역의 잡척이 궁원에 투탁 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이를 달리 생각해 보면, 태조는 궁원이 정치 세력을 성장케 하는 하나의 장(場)이 될까 염려하였던 것이 아닐까 싶다.¹¹⁵⁾

실제로 태조비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황주원 즉 명복궁은 1명의 국왕과 2명의 후비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신정왕태후는 자신의 아들인 대종 왕욱을 또 다른 태조비 정덕왕후 유씨 소생의 선의태후와 맺어주었다. 그러나 아들

113) 후비 궁원의 궁관 역임자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궁관 가운데 内侍로서 궁관에 임명된 사례가 확인된다고 한다. 고려시대 내시는 국왕의 측근으로, 이들을 궁관에 임명한 사실은 궁원에 대한 일정한 감시와 통제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혜영, 『고려시대 后妃 宮院 연구』, 2023,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1~152쪽.

114)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26年 4月.

115) 훈요십조는 태조 당대에 만들어졌다는 진작설과 후일에 조작되었다는 위작설이 있다. 진작설(대표적으로 이병도, 「태조십훈요에 대한 신고찰과 거기에 나타난 지리도참」, 『고려시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0)과 위작설(대표적으로 今西龍, 「新羅僧道誂に就きて」, 『동양학보』 8-3, 1918) 모두 훈요 8조의 ‘車峴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並趨背逆’ 구절에만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차남이현 공주강외’와 ‘관사노 진역잡척’을 나누어 보아야 하며, 전자는 현종대 후자는 태조대 작성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김병인·김도영, 「고려 태조의 訓要8조에 대한 재검토」, 『도서문화』 52, 2018).

부부가 광종 연간 일찍 사망하자 그 자녀들을 거두었다.¹¹⁶⁾ 이들이 바로 성종, 경종비 현애왕태후 황보씨와 경종비 현정왕후 황보씨이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목종 연간에는 후비 궁원에서 국왕과 후비를 배출해 내는 경험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조정에서는 궁원을 감독하고 통제할 필요성을 체감하였고, 이에 중앙에서 파견하는 궁관을 정비하여 궁원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요컨대 후비 궁원은 경종~목종 연간에 걸쳐 궁호가 변경되었으며 또 궁관이 정비되는 등 이전 시기에 비해 하나의 제도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현종대 궁부인·원부인에서 궁주·원주로의 칭호로 변화한 것도¹¹⁷⁾ 경종~목종대 궁원의 정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IV. 맷음말

고려에서는 국왕의 배우자 즉 후비에게 독립적인 별궁과 경제 기반을 하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궁관을 설치하는 제도 즉 후비 궁원 제도를 운영하였다. 본고는 후비 궁원 제도가 정확히 언제 시행되었고 어떠한 변화를 겪으며 정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맷음말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한국사에서 후비가 언제부터 독립적인 궁원을 보유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일찍이 신라에서도 왕실 여성이 궁원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왕의 배우자 가운데 궁원을 하사받은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후비에게 궁원을 하사하는 현상은 고려시대에 들어와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초 후비가 태조 당대부터 궁·원부인으로 불린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 칭호는 단순히 상징적인 칭호가 아니라 본궐 밖 궁원의

116)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太祖 神靜王太后 皇甫氏.

117) 이정란, 앞의 논문, 1996.

보유를 전제로 한 칭호였다. 예컨대 태조비 소서원부인과 대서원부인은 각각 소서원과 대서원을 하사받아 대서원부인과 소서원부인으로 불렸던 것이다. 한편 두 후비가 대·소서원을 하사받을 때 전민(田民)을 함께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국초 모든 후비에게 경제 기반을 하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태조대 경제 기반으로 전민(田民)을 수반한 후비 궁원의 시원적 모습이 확인된다.

고려 초 후비 궁원은 본궐의 미비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출현하였다. 국초의 본궐은 궁예 시절 태봉·마진의 본궐을 활용한 것으로, 연이은 국내의 반란과 통일전쟁으로 인해 증축이나 확대 공사가 어려웠다. 따라서 국초의 본궐은 태조의 후비와 왕자녀를 수용하기엔 매우 협소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혼인을 위해 본향을 떠나 개경에 머물게 된 후비들은 머무를 공간이 필요했고, 그 결과 실제 거주 공간으로서 후비 궁원이 등장하였다.

Ⅲ장에서는 경종대부터 목종대까지 후비 궁원 제도의 점진적 정비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주목한 것은 두 가지였다. 먼저 후비 궁원명의 변화이다. 태조~광종대 후비 궁원은 대체로 황주원, 대량원과 같이 지명으로 이름하였다면 경종 이후의 후비 궁원은 명복궁, 승덕궁과 같이 아화된 표현으로 이름하였다. 이러한 후비 궁원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편년 기록은 경종 원년(976)에 황주원을 명복궁으로 고친 일로, 최소한 경종 연간부터 궁원의 개호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종 연간은 봉작제의 정비 등 여러 정치 제도가 정비되는 시기로 이해된다. 특히 선왕인 광종대 대대적인 정궁 증축 공사로 여러 후비를 수용할 내전이 마련되면서 후비 궁원은 실제 거주지에서 왕실의 별궁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에 경종대에 들어와 ‘왕실의 별궁’의 위상에 맞게 궁원의 개호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목종대 궁관의 출현이다. 일찍이 신라에서는 왕실의 별궁에 사인, 궁리 등 인력을 설치하여 별궁 및 여기에 부속된 경제 기반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유제로부터 영향을 받아 고려 초 견훤의 납궁 등과

같은 일부 궁원에 궁관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국초 후비 궁원의 경우 궁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데, 국초 후비 궁원은 궁원 주인의 측근 또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달하여 궁원을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목종 연간에 들어와 천추태후 황보씨의 궁원인 승덕궁 즉 천추궁에서 궁사 등 궁관의 존재가 확인된다. 궁관은 기록상 목종대부터 확인되지만 여러 권무직이 성종대 마련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궁관 역시 성종대 정비되었을 것이다. 한편, 궁관은 궁원의 경제 기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궁원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파견된 조정의 관료였다. 즉 궁관은 궁원의 통제와 감시를 위해 성종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고려시대 후비 궁원의 시행과 정비에 주목하여 후비 궁원은 고려초 특수한 상황에 출현하였으며 경종~목종 연간 궁원의 개호, 궁관의 설치 등 정비된 사실을 밝혔다. 다만 궁원전, 장전과 같은 경제 기반이 언제부터 또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남는다.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三國遺事』『高麗史』『高麗史節要』『新增東國輿地勝覽』

김용선, 『第五版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김용선, 『(속)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출판부, 2016

김대식, 『고려 중앙정치제도사의 신연구』, 혜안, 2009

김선미, 『高麗前期 王位繼承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김광수, 『고려시대의 권무직』, 『한국사연구』 30, 1980

김선주, 『신라 경덕왕대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생애와 정치적 의미』, 『역사학연구』 44, 2011

권덕영, 『筆寫本 花郎世紀의 史料的 檢討』, 『역사학보』 123, 1989

권순형, 『고려 内職制의 비교사적 고찰 - 요·금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고려와 북방문화』, 양사재, 2011

김영미, 『新羅佛教思想史研究』, 민족사, 1994

김병인·김도영, 『고려 태조의 訓要8조에 대한 재검토』, 『도서문화』 52, 2018

김창현, 『고려의 여성과 문화』, 신서원, 2007

김창현, 『고려 개경의 도성 구조와 궁성 : 도성 구조의 완성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79, 2020.

김창현,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

노명호, 『羅末麗初 豪族勢力의 경제적 기반과 田柴科體制의 성립』, 『진단학보』 74, 1992

안병우,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박종진, 『高麗初 公田·私田의 性格에 대한 재검토 : 顯宗代 〈義倉租收取規定〉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0-4, 1984

박종진, 『고려시기 개경 절의 위치와 기능』, 『역사와현실』 38, 2000

백동인, 『阿老에서 宮主로 : 新羅 麻立干期 王실과 宮主』, 『한국고대사연구』 105, 2022

- 이정란, 「高麗 后妃의 號稱에 관한 考察」, 『전농사론』 2, 1996
- 이정란, 「고려 肅宗妃 明懿太后의 정치적 위상」, 『고려의 왕비 : 내조자와 국모로서의 삶』, 경인문화사, 2015
- 이정훈, 「고려전기 후비(后妃)의 칭호에 대한 제문제」, 『역사와실학』 77, 2022
- 이현주, 「신라 상고 시기 부인(夫人) 칭호의 수용과 의미」, 『역사와현실』 86, 2012
- 이현주, 「신라 중대 효성왕대 혜명왕후와 ‘正妃’의 위상」, 『한국고대사탐구』 21, 2015
- 장상렬, 「고려왕궁 : 만월대 건축에 쓴 측도기준」, 『고고민속론문집』 11, 1988
- 정용숙, 『高麗王室族內婚研究』, 새문사
- 조범환, 『신라 중대 혼인 정치사』, 일조각, 2023
- 하일식, 「해인사전권(田券)과 묘길상탑기(妙吉祥塔記)」, 『역사와현실』 24, 1997
-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1998.
- 홍영의, 「고려시기 개경의 궁궐 조영과 운영」,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 황항주, 「고려 태조-목종대 왕실의 편제 : 왕실 남성의 ‘태자(太子)’·‘군(君)’칭호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7, 2022
- 황항주, 「고려 전·중기 왕실 여성의 편제와 그 특성-‘주(主)’계열 칭호의 존재 배경과 활용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74, 2023
- 황항주, 「고려 전·중기 연경궁(延慶宮)의 위상과 위치」, 『한국중세사연구』 76, 2024
- 前間恭作, 「開京宮殿簿」, 『朝鮮學報』 26, 1963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 .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

Abstract

THE IMPLEMENTATION AND ORGANIZATION OF THE
GUNGWON SYSTEM FOR HUBI(后妃) IN EARLY GORYEO

SHIN HYEYEONG (SHIN, HYE YEONG)

In Goryeo, the Gungwon system for Hubi was managed to bestow a detached independent palace and economic foundation on Hubi, the spouses of kings, and assign palace officials to the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xact year when the Gungwon system for Hubi was implemented and the changes it underwent for its organization.

The Gungwon system for Hubi first came into effect under the unique situation of early Goryeo. Before it, women in the royal family of Silla might have owned a Gungwon, but there were no cases in which the spouses of kings owned a Gungwon. In early Goryeo, Hubi was called Bu-in or Won-bu-in, starting in the reign of King Taejo. These titles were not in name only, but they were on the premise of owning a Gungwon outside the palace. In fact, Lady Kim, who was King Taejo's wife and called Daeseowon-bu-in, received Daeseowon while another Lady Kim, who was another wife of King Taejo and called Soseowon-bu-in, received Soseowon. The Gungwon system for Hubi was actually implemented for the realistic reason that the main palace was small in the early days of Goryeo.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the main palace was not equipped fully for a royal palace in the situations involving the early stage of the

country's foundation and the war fo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 main palace could not accommodate the Hubis that the king received through marriage of convenience. The government recognized a need for places where the Hubis that came to Gaegyeong to marry King Taejo could stay and accordingly bestowed a Gungwon on them.

The Gungwon system for Hubi was organized during the reigns of King Gyeongjong-King Mokjong. There were changes to the names of Gungwons during this period. During the reigns of King Taejo-King Gwangjong, Gungwons for Hubi were named after place names associated with the Hubis like Hwangjuwon. Since the reign of King Gyeongjong, all the Gungwons for Hubi received names as a palace that became Ahwa like Myeongbokgung. These changes happened as the names of Gungwons were changed to fit their status as a "detached independent palace of the royal family" after a shift in the nature of Gungwons for Hubi from an actual residence to a detached independent palace of the royal family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jong. During the years of King Mokjong, they made the first government position for Gungwons. Palace officials first appeared in the records during the years of King Mokjong, but the system of palace officials must have been implemented during the years of King Seongjong at the latest to manage the economic power of Gungwons comprehensively and prevent them from turning into a political for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entralized power system.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Gungwon system was organized during the reigns of King Gyeongjong-King Mokjong and that the titles of Gungju and Wonju appear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eonjong as an extension.

Key Words : the Gungwon system for Hubi, Hubi, Gungwon, Byeolgung, Gunggwan

[부록]

〈표 1〉 태조의 후비

| | 후비 | 后妃 宮院 | 칭호 | | 자녀 | 비고 |
|---|-------------------------|------------------------|-----------------------|---|---|--------------------|
| | | | 생전 | 사후 | | |
| 1 | 神惠王后 柳氏 | | ·河東郡夫人 (태조 16) | ·神惠王后 | | ·비구니 ·顯陵에 耐葬 |
| 2 | 莊和王后 吳氏 | | | ·莊和王后 | ·혜종 (효공왕 16) | |
| 3 | 神明順成王 太后 劉氏 | | | ·神明順聖 太后 | ·太子 泰 ·定宗 (태조 6) ·광종 (태조 8) ·文元大王 貞 ·證通國師 ·樂浪公主 ·興芳宮主 | |
| 4 | 神靜王太后 皇甫氏 (?-983) | 黃州院 → 明福宮 (경종 1) | ·明福宮大夫 人 (경종 1) | ·神靜大王 太后 (성종 2) · 定憲 (목종 5) · 慶敬 (현종 5) · 宣德 (현종 18) · 慈景 (문종 10) · 柔明 (인종 18) · 貞平 (고종 40) | ·戴宗 旭 ·大穆王后 | ·壽陵 ·성종 양육 |

| | | | | | | |
|----|---------------|---------------------|--|---------------------|---|-----|
| 5 | 神成王太后 金氏 | [大良院 또는 前大良院] | | ·神成王太 后 [현종대] | ·安宗 郁 | ·貞陵 |
| 6 | 貞德王后 柳氏 | | | | ·王位君 ·仁愛君 ·元莊太子 ·助伊君 ·문혜왕후 ·선의왕후 | |
| 7 | 獻穆大夫人 平氏 | | | | ·壽命太子 | |
| 8 | 貞穆夫人 王氏 | | | | ·順安王大妃 | |
| 9 | 東陽院夫人 庾氏 | [東陽院] | | | ·孝穆太子 義 ·孝隱太子 | |
| 10 | 肅穆夫人 | | | | ·元寧太子 | |
| 11 | 天安府院夫 人 林氏 | [天安府院] | | | ·孝成太子 琳珠 ·孝祇太子 | |
| 12 | 興福院夫人 洪氏 | [興福院] | | | ·太子 穩 ·공주 | |
| 13 | 後大良院夫 人 李氏 | [後大良院] | | | | |
| 14 | 大溟州院夫 人 王氏 | [大溟州院] | | | | |
| 15 | 廣州院夫人 王氏 | [廣州院] | | | | |
| 16 | 小廣州院夫 人 王氏 | [小廣州院] | | | ·廣州院君 | |
| 17 | 東山院夫人 朴氏 | [東山院] | | | | |

| | | | | | | |
|----|---------------|--------|--|--|--------------------------------|-----------------------------|
| 18 | 禮和夫人 王氏 | | | | | |
| 19 | 大西院夫人 金氏 | 大西院 | | | | .비구니 |
| 20 | 小西院夫人 金氏 | 小西院 | | | | .비구니 |
| 21 | 西殿院夫人 | [西殿院] | | | | |
| 22 | 信州院夫人 康氏 | [信州院] | | | .왕자 | .소생자가 요절하자 광종을 양육함 |
| 23 | 月華院夫人 | [月華院] | | | | |
| 24 | 小黃州院夫 人 順行 | [小黃州院] | | | | |
| 25 | 聖茂夫人 朴氏 | | | | .孝悌太子 .孝明太子 .法登君 .資利君 | |
| 26 | 義城府院夫 人 洪氏 | [義城府院] | | | .義城府院大君 | |
| 27 | 月鏡院夫人 朴氏 | [月鏡院] | | | | |
| 28 | 夢良院夫人 朴氏 | [夢良院] | | | | |
| 29 | 海良院夫人 | [海良院] | | | | |

※ 위 표에서 후비 궁원 다음의 팔호는 궁원 하사 시점을 의미함.

※ 위 표에서 칭호 다음의 팔호는 책봉 혹은 추증 시기를 의미함.

※ 위 표에서 소생자 다음의 팔호는 소생자의 출생 연도를 의미함.

※ 위 표에서 → 는 궁호 변경 또는 궁원 건물의 교체를 의미함.

※ 위 표에서 []는 추정을 의미함.

※ 위 표는 「후비전」, 「종실전」, 「공주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그 외 전거는 비고에 표기함.

